

제 호

건설업 기초안전·보건교육기관 등록증

- 기관명:
- 대표자 성명:
- 소재지: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기초안전·보건교육기관으로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

직인